

# 작업 환경 측정

## 법적 근거 및 목적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.

## 대 상

-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(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)

### ※유해인자

화학적 인자(유기화합물, 금속류 등) 183종, 물리적 인자(소음 등) 2종, 분진(광물성 분진 등) 7종 등

### ※예외사항

- 임시(월 24시간 미만) 및 단시간(1인 1시간 미만) 작업
-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
-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(분진에 관한 측정만 해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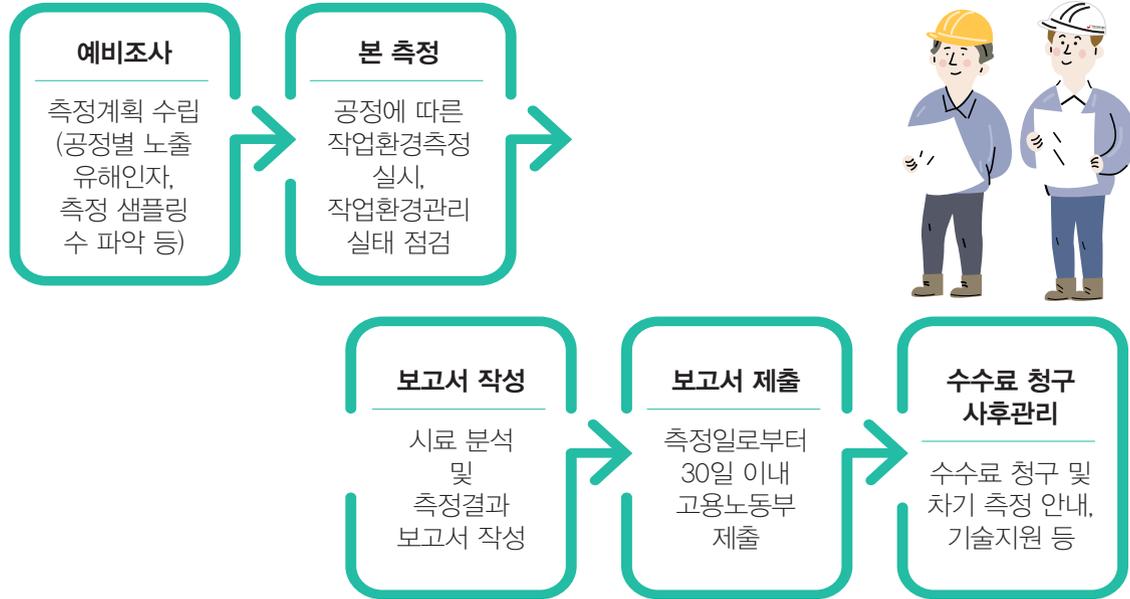
## 주 기

- 최초 측정  
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
- 차기 측정

반기에 1회 이상	- 소음 2회 연속 85dB 미만 -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 결과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	1년에 1회 이상
	- 특별관리물질, 허가대상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- 위 물질 제외 노출기준 2배 초과	3개월에 1회 이상



### 업무절차



\*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.

### 측정·분석방법

- 「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」(고용노동부 제2020-44호) 준수

### 기 타

-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
-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(측정기관으로 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)
-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(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) 보존



※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제일 뒷장 해당 지역본부 및 센터로 연락바랍니다.